

제348회 서초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유지웅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470호)]



2026.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470호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유지웅의원	제출연월일	2026. 3. 12.
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민희

I

제안내용

1. 제안이유

마을버스 업계 전반에 걸쳐 운수종사자 이탈과 구인난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조항을 신설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마을버스 운행의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의 교통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나. 처우개선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나. 예산조치 : 예산편성 필요

다. 입법예고 : 2026. 3. 17. ~ 2026. 3. 22.(총5일), 의견 없음

II

검토의견

1. 개정조례안의 제출 배경

- 마을버스는 고지대, 아파트 단지, 전통시장, 주택가 등 시내버스가 접근하기 어려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마을버스를 통해 시내버스 또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대중교통 취약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이나 교통약자에게는 관내 이동 시에도 중요한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게다가 서초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마을버스 운영 규모가 가장 큰 데다가 서울시 자치구 평균 대비 2배 이상이지만, 그 운영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음. 2026. 3. 기준 서초구 마을버스 전체 노선의 운전기사 정원은 327명이지만, 근무 인원은 282명으로 45명의 운전기사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서초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현황>

(단위 : 대, 명)

연번	업체명	노선	등록대수 (예비차)	운전기사		
				정원	현원	채용률
1	광일운수	서초05	2(1)	38	33	86.8%
		서초06	2			
		서초16	4			
		서초17	9(1)			
2	계현운수	서초22	3	7	5	71%
3	구민버스	서초18	9	22	22	100%
		서초18-1	1(1)			
4	부생운수	서초07	3	27	25	93%
		서초15	9(1)			
5	양재운수	서초08	7	22	21	95%
		서초20	3			
6	서일교통	서초03	11	25	16	64%
7	서초그린교통	서초01	2	18	13	72%
		서초02	6			
8	서초교통	서초10	9	20	20	100%
9	서애운수	서초11	9	20	20	100%
10	선흥상운	서초21	14	31	26	84%
11	청암운수	서초18	11	27	22	81%
		서초18-1	1			
12	청진교통	서초14	7(1)	16	16	100%
13	청진운수	서초13	11(1)	25	24	96%
14	청화운수	서초09	13	29	19	66%
합 계	14개 업체	20개 노선	146대(6)	327	282	86.5%

- 마을버스 기사 수의 부족으로 운행 횟수가 감소하게 되면 이는 곧 배차간격 지연 등으로 이어지며, 정류장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은 고스란히 승객들이 떠안게 됨. 이로 인해 승차 시 승객 과밀현상으로 불편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 다수의 민원 발생을 초래하게 됨.
- 최근 마을버스 업계 전반에 걸쳐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근로 여건으로 인해 다른 직종에 비해 이직률이 높고, 신규 채용이 어려워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기사 수 자연 감소 등으로 마을버스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조례안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급여의 구조적 처우 미흡과 관리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2. 주요 개정사항

■ 제명 변경

- 자치법규의 제명은 자치법규의 고유한 이름으로 해당 자치법규가 갖는 성격, 특성 및 규율 내용을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하여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띠도록 함으로써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된 것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

- 이는 현행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주제로 하여 제명을 규정한 것임.
- 한편 본 개정조례안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조항을 신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개개인에 대한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그렇다면 우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을 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1)제4호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

1)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방재정을 지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다음으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인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해당 사업의 추진을 통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고용 안정 및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승객의 안전 확보 및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것이 본 조례안의 주된 개정 사유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법제처는 보도자료²⁾를 통해 마을버스조례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법제처는 그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그러므로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여 해당 조례를 통해 추진하려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1조(목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려는 경우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제1조는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임을 명확하게 적시하였음.

2) 법제처, 『주민의 발, 마을버스’ 불편을 해결한 자치입법의 현장에 가다』(2025. 10. 1.)

- 아울러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이외에도 서초구에서 관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을 자치사무로 추진하려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목적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안 제1조는 위임조례와 자치조례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보임.

■ 안 제2조제4호(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신설

- 안 제2조제4호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본 조례안의 지원 대상인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취지와 어긋나거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급) 신설

- 준공영제 대상인 시내버스가 손실액 100%를 서울시에서 보전받는 것과는 달리 민영제인 서울시 마을버스는 기본요금의 절반만을 정산받고 있으며, 유류비 상승 등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수익성이 낮다 하더라도 시내버스가 접근하기 어려운 고지대, 골목길 등 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관내 여러 교통수단을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있으며, 무엇보다 교통약자의 경우에는 마을버스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노선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특히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시내버스 대비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으로 신규 인력 충원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정 경력만 채우면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만성적인 인력 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임. 이러한 처우 격차는 결국 차량 배차간격 지연, 승객 혼잡도 가중, 운행 불안정,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을 유발하게 되면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오게 됨.
-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보다 근본적으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낮은 임금과 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이직률을 낮추고, 부족한 신규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 2026. 1. 기준 25개 자치구 중 5개 자치구가 월 10만원~30만원의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서울시 자치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현황>

연번	자치구	월 지원 금액	최초 지급 시기	지급 인원	업체수	노선수	소요 예산	관련근거 (조례제·개정일)
1	성동구	30만원	2023.下	120명	7개	12개	432,000 천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9.10.제정)
2	금천구	30만원	2025.5.	170명	6개	10개	612,000 천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2025. 2.28.개정)

3	광진구	30만원	2025.9.	70명	3개	5개	252,000 천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2025.7.28.개정)
4	용산구	30만원	2026.1.	60명	3개	4개	216,000 천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2025.9.26.개정)
5	마포구	10만원	2026.1.	190명	11개	16개	228,000 천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2025.9.26.개정)

-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임금 부족분을 보전함으로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원활한 마을버스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처우개선비 환수) 신설

- 안 제8조는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또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함.

Ⅲ

종합의견

- 2026. 3. 기준 관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수는 정원대비 부족한 상황이며,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경영난 악화를 비롯하여 운수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임금과 복지 수준으로 인해 신규 인력 유입의 어려움으로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음. 이러한 구인난은 결국 노선 감축으로 인한 배차 간격 지연으로 승객의 대기 시간을 증가시키고, 차내승객 과밀현상으로 불편을 야기하며, 결국 다수의 민원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됨.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급여적 처우와 복지를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처우개선비를 지급한 일부 자치구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운행 대수도 늘어났다고 함.
- 그러므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을 안정시켜 신규 인력을 확충하고, 유사업종으로의 이직을 최소화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함으

로써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영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 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을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처우개선비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392,400천원, 3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177,2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그러므로 해당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산 편성 방안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